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8 선고 2021가단525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10. 23. 접수 제35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과 2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076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5,058,432 원 및 그 중 26,675,398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2021. 3. 31. 기준 남은 대출원리금은 48,938,113원이다.

나. C의 부인 망 E은 2018. 9.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F, G이 있다.

다. C은 2019. 10. 22. 자신의 상속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9. 10. 23. 접수 제35486호로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1999년에 C에게 서산시 H 토지를 매수하여 주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정리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산시 I 답 2940㎡
소유자 B 지분(2분의 1) 중 일부(9분의 2)
2. 충청남도 서산시 J 답 3020㎡
소유자 B 지분(2분의 1) 중 일부(9분의 2)
3. 충청남도 서산시 K 답 3015㎡
소유자 B 지분 중 일부(9분의 2)
4. 충청남도 서산시 L 답 707㎡
소유자 B 지분 중 일부(9분의 2)
5. 충청남도 서산시 M 답 3420㎡
소유자 B 지분 중 일부(9분의 2)
6. 충청남도 서산시 N 답 400㎡
소유자 B 지분 중 일부(9분의 2)
7. 충청남도 서산시 O 대 1470㎡
소유자 B 지분 중 일부(9분의 2)
8. 위 7.지상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충청남도 서산시 O에 있는 P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Q
건물내역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8.94㎡
소유자 B 지분 중 일부(9분의 2) 끝.

